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523
------	------

2026.03.10.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02월 09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6년 02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03.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보조금 교부 근거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수정(안 제3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개정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잘못 표기된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됨.

#### 2. 서울특별시 의정회와 보조금 교부 근거 명확화

- 서울특별시 의정회(이하 “의정회”)는 전·현직 서울시의원 간의 친목과 변영을 도모하고자 1989년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서울시는 1996년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회의 운영 등을 보조하였음.
- 그러나 동 조례의 제정시에도 시민단체와 언론 등은 의정회가 전·현직 의원 간의 친목을 위한 단체임에도 그 운영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2012년 대법원은 서울시의 의정회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보조금 지원은 특혜 여지가 있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sup>1)</sup>.
- 이 밖에도 2008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의정회 지원 조례에서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라는 권고가 있었던바, 2008년 이후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한 조례 개정안이 5차례 제출 또는 발의되었으나

---

1) 대법원은 2004년 서초구의정회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도 서초구의정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상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령 상의 기부·보조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정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추진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대상으로 한 재의결은 위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폐기되었음.

-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5월에 ‘17개 광역 시도 및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sup>2)</sup>를 의결함에 따라 서울시는 의정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삭제하고, 사업비 보조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라 하겠음.
- 다만 서울시는 이미 2016년부터 의정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시급성이나 실익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대법원 판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 등을 수용하여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토론요지 : 「없음」

####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2) 동 권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2025.5.26.)한 것이며, 이외에도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 연임 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적정성 제고, 전문경력관 채용 공정성 강화, 지방의회 공무원 출장비 부당수령 방지 등이 개선권고 사항으로 지적됨.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23
----------	------

제출년월일 : 2026년 2월 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보조금 교부 근거법령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교부 근거 법령 수정(안 제3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평가제외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5. 11. 13. ~ 12. 3.)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기범 (☎ 2133 - 663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의정회는”을 “의정회의”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중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를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② (생략)</p> <p>③ <u>의정회는</u> 설립,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의정회의</u> ----- ----- -----.</p>
<p>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생략)</p> <p>② <u>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p>	<p>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서울특별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의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처분은 <u>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잔여재산의 귀속) ----- ----- 처분은 「<u>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u>」 제13조 ----- -----.</p>
<p>제8조(운영규정)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u>범위안</u>에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의정회 회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운영규정) ----- ----- ----- <u>범위 안</u> ----- ----- -----.</p>

#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박기범 사무관 (2133 - 6636)